

의안번호	2201257
의 퇴 인	정진욱 의원
회 답 일	2024. 9. 20.
추계번호	24A148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억 7,800만원(연평균 1억 9,6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5조)	42	42	42	42	42	210	42
지방투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 (안 제11조)	147	150	154	157	160	768	154
합 계	189	192	196	199	202	978	19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제3항 및 제4항)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행정안전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차관·국토교통부 차관 등	의무규정
3	안 제6조 (시·도 지방투자위원회)	지방에 소재한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7조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과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토지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의 일부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8조(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는 지방기업 ¹⁾ 및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9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0조(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국가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업·근로자·주민 등 경제주체 간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²⁾ 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 투자기구의 조성 및 조세특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수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3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이연·감경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1	안 제15조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6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7조(기회발전특구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특례 ³⁾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 ⁴⁾ 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6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28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 3) 기회발전특구특례: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노동,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법령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는 특례

안 제17조(기회발전특구특례) ① 시·도지사는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노동,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법령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특례(이하 “기회발전특구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4)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하여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

안 제19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지역기반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	—
3	안 제6조 (시·도 지방투자위원회)	×	시·도지사가 지방투자 유치·촉진을 위하여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위원정수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는 것 또한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7조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투자에 대하여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⁵⁾와 유사하여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 등에 따라 현행 규정과 비교할 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지방이전 및 사업장 신설·증설의 범위와 지원 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제정규정과 관련하여 기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투자촉진” 사업 등이 있음 * [참고자료 1]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현황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8조(지방기업 및 지방 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제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수입 감소 요인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 감면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인원수와 근로소득 자료 및 감면 수준 등이 필요하나, 현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9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학연(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⁶⁾ 와 유사하여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안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인력양성 지원의 대상”의 범위에 따라 현행 규정과 비교할 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 및 요건 등을 알 수 없어 추계에 필요한 사업량이나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제정규정과 관련하여 기 실시되고 있는 인력양성 지원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 등이 있음 * [참고자료 2]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방 인력양성 지원 사업 현황
7	안 제10조(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이미 실시 중이므로,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서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3]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8	안 제11조(실태조사)	○	—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⁷⁾와 동일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신설될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및 감면 요건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연계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등 조세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액을 폐지할 계획임 * [참고자료 4] 기회발전특구 조세 지원 현황

2. ~ 4. (생략)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 투자기구의 조성 및 조세특례)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수익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이연감경하는 경우 국가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및 감면 요건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연계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⁸⁾
11	안 제15조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 특구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5]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 [참고자료 6]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사업 현황
12	안 제16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및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7] 지역 연구·개발 지원 사업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17조(기회발전특구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4	안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 등이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내에 운영될 실증특례의 건수와 시험·검사의 위탁에 소요되는 건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5	안 제26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건축·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에 설립·운영될 외국인학교의 수와 규모를 알 수 없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범위와 지원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참고로, 안 제26조와 유사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으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⁹⁾ 가 있으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이를 근거로 실시 중인 국가사업이 없으므로 해당 사례를 준용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음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28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대체초지 조성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개발사업에 사용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②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방식과 예상 점용·사용량, ③대체초지조성이 필요한 예상 면적 등을 알아야 하나,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개발사업의 규모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초지 전용 면적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1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제1항¹⁰⁾에 따라 지방투자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설치되며, 안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 20명 중 14명으로 가정
 - 안 제5조¹¹⁾에 따르면 위원 정수는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이며 이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차관 5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 지방투자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당연직 위원이 될 중앙행정기관 차관의 범위를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제정안에 따른 최대 인원인 20명으로 하고,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14명으로 가정
- * 당연직 위원(5명):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10) 안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① 지방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둔다.
(각 호 생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11) 안 제5조(지방투자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지방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회의 횟수는 연 12회(월평균 1회)로 가정
 - － 지방투자위원회의 회의 빈도 및 주기를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상부위원회)의 최근 회의 횟수를 준용하여 월평균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²⁾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위촉직 위원의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1조) 실태조사 실시 비용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보조 또는 출연의 형태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¹³⁾와 유사하나,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 규정인 반면 제정안은 지방투자(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통계 작성 및 조사와는 별도로 실태조사가 신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출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소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다른 실태조사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 추계기간을 고려하여 준용 금액에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1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정안에 실태조사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추계를 위하여 202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억 1,000만원(연평균 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위원 수(14명) × 회의 횟수(12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4,200만원

[표 2]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방투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5조)	42	42	42	42	42	210	42

나. 지방투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11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지방투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 비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출연하여 수행하는 다른 실태조사의 평균 예산을 준용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총 7억 6,800만원(연평균 1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태조사 예산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실태조사명	세부사업명(코드)	조사 개요	2024 예산
표준화 실태조사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	70
산업디지털전환 실태조사	산업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구축 (3174-328)	·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	100
미시산업통계 설문조사 (업종별, 지역별 경기실태 조사)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구축사업 (3133-301)	·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발전시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산업 현안 관련 실태조사 실시	120 ¹⁾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지식서비스기반 구축(3688-314)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닝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	180
중견기업 실태조사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4301-30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250 ²⁾

주: 1) 실태조사 4회 × 30백만원 = 120백만원

2) 실태조사 2식 × 125백만원 = 250백만원

자료: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지방투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방투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 (안 제11조)	147	150	154	157	160	768	15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 개요	2024 예산 (내역사업)
지역균형발전지원 (3362-305) -한국형 쿼스타트 프로그램	산업통상 자원부	·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	16,661 (1,500)
지역투자촉진 (3363-30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산업통상 자원부	· 지방투자기업(지방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입지 및 설비보조금(국비+지방비 매칭) 등으로 지원	208,826 (207,862)
지역투자촉진(세종) (3363-307)	산업통상 자원부	· 상동(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계정)	3,860

주: 지역균형발전지원 및 지역투자촉진 사업의 경우 일부 내역만 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 내역사업명 및 내역사업 예산액을 함께 기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방 인력양성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 개요	2024 예산 (내역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3362-319) -인력양성	산업통상 자원부	·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취업 연계 및 지역 특화 분야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으로써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9,000 (2,8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301-4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와 연계한 교육체계 개편 및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	1,202,500 (342,0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자치단체지원	고용 노동부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지원	106,292 (94,767)

주: 각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 내역사업명 및 내역사업 예산액을 함께 기재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3]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코드)	소관	사업 개요	2024 예산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지원 (3362-332)	산업 통상 자원부	·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을 발굴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수요맞춤형(Bottom-up)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 참여 및 경쟁력 강화 도모	1,720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4] 기회발전특구 조세 지원 현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2024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재산세	·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2025 (계획)	상속세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주: 2025년의 조세 지원 사항은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7.25.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6.20.)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7.25.)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5]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지역(입지)		분야	면적 (만평)	지정여부
경북	구미(구미국가산단 1~5단지)	반도체·이차전지·방산	57	지정
	안동(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단)	바이오	7	지정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영일만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77	지정
	상주(청리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11	지정
	경주(명계3 일반산단)	물류센터, 자동차부품	7	보완후 재심의
	영주(반구농공단지)	자동차부품	3	보완후 재심의
전남	광양(광양국가산단 동호안) 여수(율촌 제1일반산단) 순천(세풍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47	지정
	목포(목포신항 배후단지) 해남(해남 화원조선산단)	해상풍력 터빈 등	19	지정
	해남(기업도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단지	20	조건부 지정 (변전소 건설 확정)
	여수(묘도 항만 재개발사업지)	LNG터미널, 수소 생산·발전	34	지정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	▶ 일부 구역	2	조건부 지정 (사업허가 得)
		문화콘텐츠	3.1	지정
	(원도심 시민로)	▶ 일부 구역	0.4	보완후 재심의
	무안(무안 항공특화산단)	항공정비	3	보완후 재심의
		화합물 반도체	6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국가산단)	탄소섬유	29.9	지정
전북	익산(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동물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21.7	지정
	정읍(첨단과학일반단지)	자동차부품, 특장차	36.9	지정
	김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 일반산단)	자동차부품, 특장차	36.9	지정
	수성구(수성알파시티)	데이터센터, ICT/SW	7.7	지정
대구	달성군(대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부품	64.9	지정
	북구(금호워터폴리스)	전기차·로봇 부품	10.1	지정
	유성구(원촌 첨단바이오혁신지구)	바이오	12.2	지정
대전	유성구(안산 첨단국방산단)	방산	48.1	조건부 지정 (GB해제 중도위 심의)
	고성(양촌·용정 일반산단)	해상풍력 구조물	47.6	지정
부산	동구(북항재개발 2단계지역)	금융	22.7	지정
	남구(문현금융단지)	금융	22.7	지정
제주	서귀포(하원 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	9.1	지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6.20.)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참고자료 6]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 개요	2024 예산 (내역사업)
지역균형발전지원 (3362-305) -기회발전특구지원	산업 통상 자원부	·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및 컨설팅단 운영 지원, 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및 지방정부와의 소통채널 마련 등을 지원	16,661 (1,850)

주: 해당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 내역사업명 및 내역사업 예산액을 함께 기재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7] 지역 연구·개발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코드)	소관	사업 개요	2024 예산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3365-345)	산업통상 자원부	·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및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의 R&D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0,187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제주) (3375-345)	산업통상 자원부	· 상동(제주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4,375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3362-301)	산업통상 자원부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36,18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세종) (3362-301)	산업통상 자원부	· 상동(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계정)	2,892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제주) (3372-301)	산업통상 자원부	· 상동(제주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3,0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